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4028 재산분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redacted]재단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7.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주민세(재산분) 3,361,250원 중 가산세 1,369,750원 부분, 2012년 주민세(재산분) 3,143,180원 중 가산세 1,151,680원 부분, 2013년 주민세(재산분) 2,925,110원 중 가산세 933,610원 부분, 2014년 주민세(재산분) 2,707,040원 중 가산세 715,540원 부분, 2015년 주민세(재산분) 2,488,970원 중 가산세 497,470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주민세(재산분) 3,361,250원, 2012년 주민세(재산분) 3,143,180원, 2013년 주민세(재산분) 2,925,110원, 2014년 주민세(재산분) 2,707,040원, 2015년 주민세(재산분) 2,488,9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로 [redacted](구 [redacted]동)에 사업소 연면적 7,966.5㎡인 [redacted]박물관(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주민세(재산분) 본세 1,991,500원, 가산세 1,369,750원 합계 3,361,250원, 2012년 주민세(재산분) 본세 1,991,500원, 가산세 1,151,680원 합계 3,143,180원, 2013년 주민세(재산분) 본세 1,991,500원, 가산세 933,610원 합계 2,925,110원, 2014년 주민세(재산분) 본세 1,991,500원, 가산세 715,540원 합계 2,707,040원, 2015년 주민세(재산분) 본세 1,991,500원, 가산세 497,470원 합계 2,488,9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17.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각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본안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각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가 개관한 1978. 10. 25.부터 1987. 6. 30.까지 원고는 재산분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1987. 7. 1.부터 재산분 과세 대상이었음에도, ① 28여년에 걸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재산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납부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1978년부터 3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비영리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한 점, 원고가 국내 최초로 대규모 민속박물관을 개관하며 대표적인 민속박물관의 위상을 갖추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사업소가 입장료 수입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아산시로부터 수차례 각종 지원금을 받아올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온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여왔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재산분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왔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에 대한 비과세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립박물관에 대하여는 재산분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제20조 제3항 소정의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들여진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참조). 또한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손호영

판사 박지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 (비과세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
3. 교육법에 의하여 허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다만, 당해 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대한 재산할에 한한다.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1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 · 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